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신고자 등에 대한 형 감면 의무화〉

■ 김현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453, 2211454호)

2025. 11.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1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
II. 검토의견: 신고자 등에 대한 형 감면 의무화	4
※ 참고자료	13

I. 개 요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김현정의원 등 12인
- (2) 제안일 : 2025. 7. 11.
- (3) 회부일 : 2025. 7. 1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부패행위 등의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의 필수적 감면이 아닌 임의적 감면으로 되어 있음.

그 결과, 신고자가 본인의 범죄 사실이 함께 드러날 가능성을 우려하여 신고를 꺼리는 문제가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신고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부패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고, 조사·수사·소송 절차에 성실히 협조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 하에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이 감경·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함
(안 제66조제1항).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김현정의원 등 13인
- (2) 제안일 : 2025. 7. 11.
- (3) 회부일 : 2025. 7. 1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부패행위 등의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의 필수적 감면이 아닌 임의적 감면으로 되어 있음.

그 결과, 신고자가 본인의 범죄 사실이 함께 드러날 가능성을 우려하여 신고를 꺼리는 문제가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신고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부패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고, 조사·수사·소송 절차에 성실히 협조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 하에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이 감경·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안 제14조제1항).

II. 검토의견: 신고자 등에 대한 형 감면 의무화

☐ 2건의 개정안(「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요건 하에서 신고자 등에 대한 형의 감경·면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 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 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 ----- ----- ----- ----- <u>. 다만, 신고자가 해당 범죄행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거나 그 밖에 감면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u> <u>1. 조사기관이 부패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u>
<신설>	

	서 신고자가 신고등을 하였을 것
<신 설>	2. 신고자가 조사·감사·수사·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진술 및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 ----- ----- ----- . 다만, 공익신고자가 해당 범죄행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거나, 그 밖에 감경 또는 면제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신 설>	1.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신 설> ② ~ ⑧ (생 략)	<u>공익침해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하였을 것</u> 2. <u>공익신고자등이 조사·수사·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진술·증언 및 자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u> ② ~ ⑧ (현행과 같음)
---------------------------------------	---

- 현행법은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이하 “부패행위등”이라 함)에 대한 신고 또는 협조행위(이하 “신고등”이라 함)와 관련하여 신고등을 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함)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5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 ⑧ (생 략)

○ 그런데 형의 감경·면제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임의적 사항²⁾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인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신고등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① 부패행위등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하고, ② 신고자등이 조사·수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으며, ③ 신고자등이 해당 범죄행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거나 감경 또는 면제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형의 감경·면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입법취지를 긍정할 수 있음.

○ 첫째, 부패행위등의 특성상 내부자의 신고, 협조 없이는 적발, 조사 및 처벌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신고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내부 가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협력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 둘째, 임의적 감면 사유인 자수³⁾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그 처분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부패행위등의 신고등은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판례: 2013도1685(대법원 2013. 6. 13. 선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소정의 형의 감면사유는 필요한 형의 감면사유가 아니고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임의적인 것에 불과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 판례: 2023도15052(대법원 2024. 6. 13. 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 심법원의 재량에 속함.

3)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자신의 범행을 알리기보다는 은폐된 부패행위등을 세상에 알려 범죄 예방과 중대한 재난을 대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⁴⁾ 일반 범죄의 자수범과 달리 필요적 감면의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 셋째, 개정안은 안 제66조(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형을 감면하도록 하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신고자등이 범죄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거나 감면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으면 제외하도록 한계를 설정하여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이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함께 다른 법 체계와의 조화, 이전 심사 과정에서의 논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필요적 형 감면을 규정한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 주로 ‘예비·음모의 죄’에 있어서 ‘자수’한 경우 등에 대하여 규정⁵⁾⁶⁾하고 있고, 개정안과 비슷한 입법 목적을 가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서도 임의적 감면으로 규정⁷⁾하고 있음.

4) 김병수, “부패범죄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형사법적 제언”, 한국부패학회보 제27권 제3호, 2022년, 156면

5) 필요적 형 감경·면제 관련 입법례(참고자료) 참조(p.14)

6) 다만,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진술, 자료 제공 등으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필요적 감면을 규정한 입법례도 있음.

7)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 범죄신고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둘째, 정부는 2011년 7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조직범죄 등의 가담자가 사건해결 또는 공범 검거에 기여할 경우 기소 자체를 면제해 주거나 형을 감경해 주는 ‘사범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⁸⁾’를 의결한 바 있으나, 반대 여론이 많아 유보된 바 있음.

또한, 제20대국회에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정무위원회에서 제안되었으나,⁹⁾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형의 감경이나 면제는 법원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지적 등으로,¹⁰⁾¹¹⁾ 임기만료 폐기된 바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20대국회 우리 위원회 의결안과 비교하면, 개정안은 형식적으로 제2항 신설이 아닌 제1항에 단서 규정을 두는 형태이고, 내용적으로 나머지는 동일하나 ‘공익신고자가 범죄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거나 감면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사유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2629호)’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2633호)’이 2011. 7. 12. 국무회의에 상정·통과되어 제출되었으나 제18대국회 임기만료 폐기됨.

9) 제362회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2018. 7. 24.)

10) 제363회국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018. 8. 29.)

11) 정무위원회 대안 제안 이후 필요적 책임 감면 내용을 포함한 정부안(의안번호 제13902호) 심사 과정(제364회국회(정기회) 제3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2018. 12. 4.))에서도 범죄자의 도피 수단이 될 우려, 현행법에 도입되지 않은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을 도입하는 것이 된다는 점, 거짓 증언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의 반대의견이 있었음.

< 제20대국회 위원회 의결안 및 개정안 비교 >

제20대국회 정무위 의결안	개정안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익신고자등이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1.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공익침해 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익신고등을 하였을 것 2.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 또는 증언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조사·수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u>다만, 공익신고자가 해당 범죄행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거나, 그 밖에 감경 또는 면제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때를 제외하고는</u>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한다. 1.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공익침해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하였을 것 2. 공익신고자등이 조사·수사·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진술·증언 및 자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 아울러, 권익위 소관 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¹²⁾」,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¹³⁾」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¹⁴⁾¹⁵⁾」도 신고자 등에 대한 책임감면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개정안을 입법하는 경우 체계 자구와 관련된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책임 감면의 대상은 공익신고자등이므로 “공익신고자가”를 “공익신고자등이”로 수정¹⁶⁾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부칙과 관련하여, 형 감면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할 것인지, 법 시행 후 최초로 한 공익신고부터 적용할 것인지 그 적용 관계를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③ 이 법에 따른 위반 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0조(신고자 등의 보호·보상) ③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책임의 감면 등) ① 이 법에 따른 신고등과 관련하여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5) 유사 취지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1272호, 김현정의원)이 발의되어 있음.

16) 수정의견은 다음과 같음.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형 감면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 필요적 책임감면 제도를 도입한 입법례가 다수 있다는 점, 비록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결과적으로 부패행위등 적발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일정 요건하에서 형을 필수적으로 감경·면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07

개 정 안	수정의견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u>공익신고자가</u> 해당 범죄행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거나, 그 밖에 감경 또는 면제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때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한다. 1. ~ 2. (생략) ② ~ ⑧ (생략)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u>공익신고자등이</u> 해당 범죄행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거나, 그 밖에 감경 또는 면제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때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참고

필요적 형 감경·면제 관련 입법례

법 률	조 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43조(책임의 감면) ① 이 법에 따른 조사의 새로운 단 서 또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 죄가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 제한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4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제58조 또는 제59조의 죄 를 범한 사람 중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 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 경 또는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후보자 및 그 배우자 2.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3.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4.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 · 제한 등 위반죄)
공직선거법	제262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제230조제1항·제2항, 제231조제1항 및 제257조제2항 을 위반한 사람 중 금전·물품, 그 밖의 이익 등을 받 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후보자와 그 가족 또는 사 위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은 제외한다) 2.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제2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25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한 사람 *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 수 및 이해유도죄),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국가보안법	제16조(형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 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 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법 률	조 문
군사기밀 보호법	제19조(자수 감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군형법	제8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인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제16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인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제76조(예비, 음모)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와 제7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인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 제5조(반란), 제6조(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 제11조(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 제12조(군용시설 등 파괴), 제13조(간첩), 제14조(일반이적), 제66조(군용시설 등에 대한 방화), 제67조(노적 군용물에 대한 방화), 제68조(폭발물 파열), 제69조(군용시설 등 손괴), 제71조(함선·항공기의 복물 또는 손괴)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형벌 등의 감면)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가 자신의 위반사실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진 자 또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위반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법 률	조 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7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제50조(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0조의2(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 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1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가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등)
산림조합법	제13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제40조(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0조의2(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벌이나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제4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새마을금고법	제8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제22조제2항제3호(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후보자 및 그 배우자 2.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3.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4.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 제22조(임원 등의 선거운동 제한)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폭행·협박·상해·살인죄) ①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협하게 할 목적으로 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 률	조 문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인 죄의 실행에 착수(着手)하기 전에 자수한 사람은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제6조(선박 납치죄) ① 폭행이나 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을 강제로 운항하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인 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자수한 사람은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83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제53조(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조의2(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중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 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 제53조(선거운동의 제한), 제53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형벌 등의 감면)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⑦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하거나 음모(陰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인 죄를 실행하기 전에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刑)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한다.

법 률	조 문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46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제19조의2(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제47조(벌칙) ① 정당한 권한 없이 방사성물질, 핵물질, 핵폭발장치, 방사성물질비산장치 또는 방사선방출장치를 수수·소지·소유·보관·제조·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여 사람의 생명·신체를 위협하게 하거나 재산·환경에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사보타주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⑩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자수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형벌 등의 감면)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형법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제157조(자백·자수)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 제156조(무고)